

2025년 수가 안내 및 본인부담금 이원화 운영 안내문

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노인요양원 정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와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5. 1. 1.부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44조 ‘시설급여 비용’을 개정함에 따라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이 입소 어르신 2.3명당 1명(현행)과 2.1명당 1명(개정)으로 2026. 12. 31.까지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배치기준(2.3대1 또는 2.1대1)에 따라 장기요양수가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월 납부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시설에서는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2.1대1로 증원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구인난으로 인하여 2.3대1로 운영되는 달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 이해하시고 아래 표에 제시된 매달 청구 금액을 확인하시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20일

노인요양원 정원 원장 올림

[2025년 장기요양급여비용 안내]

* 30일 1개월 기준 입니다. (진료비, 약제비는 별도부담)

단위: 원

구 분			2.1대1 운영			2.3대1 운영			비급여 (석비)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기준	급여비용(1월)		90,450	83,910	79,240	86,030	79,810	75,360	8,200
	급여비용(30일)		2,713,500	2,517,300	2,377,200	2,580,900	2,394,300	2,260,800	245,000
일반	국가부담(80%)		2,170,800	2,013,840	1,901,760	2,064,720	1,915,440	1,808,640	※ 4,5 등급은 3등급과 동일
	본인부담(20%)		542,700	503,460	475,440	516,180	478,860	452,160	
	석비		245,000			245,000			
	본인부담총금액(30일)		787,700	748,460	720,440	761,180	723,860	697,160	
감 경 대 상	60% 감경	국가부담(92%)	2,496,420	2,315,920	2,187,030	2,374,430	2,202,760	2,079,940	
		본인부담(8%)	217,080	201,380	190,170	206,470	191,540	180,860	
		석비	245,000			245,000			
		본인부담총금액 (30일)	462,080	446,380	435,170	451,470	436,540	425,860	
	40% 감경	국가부담(88%)	2,387,880	2,215,230	2,091,940	2,271,200	2,106,990	1,989,510	
		본인부담(12%)	325,620	302,070	285,260	309,700	287,310	271,290	
		석비	245,000			245,000			
		본인부담총금액 (30일)	570,620	547,070	530,260	554,700	532,310	516,290	
기초 수급자	급여비용		국가부담(100%)						
	석비		자 자체 부담(100%)						
	본인부담 총금액		면 제						
계약의사 활동비용			초진				재진		
			18,410				13,160		

노인요양원 정원

2025년 촉탁의사본인부담금

구분			수급자 본인부담금			
			일반(20%)	감경대상자 (12% / 8%)	타법령에 따른 의 료급여(8%)	기초생활 수급자 0%
'25년	대면	초진(18,410원)	3,680	2,200 / 1,470	1,470	0
		재진(13,160원)	2,630	1,570 / 1,050	1,050	0
	비대면	초진(9,210원)	1,840	1,100 / 730	730	0
		재진(6,580원)	1,310	780 / 520	520	0
'24년	초진(17,610)		3,520	2,110 / 1,400	1,400	0
	재진(12,590)		2,510	1,510 / 1,000	1,000	0